

국제학대학원 학칙

- 제1장 총칙
- 제2장 과정 및 정원
- 제3장 입학
- 제4장 등록, 휴학, 제적, 복학, 재입학
- 제5장 수업 및 학점
- 제6장 자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 제7장 조직
- 제8장 연구과정 및 비학위 전문과정
- 제9장 외국인 학생
- 제10장 장학금
- 제11장 교환학생
- 제12장 복수학위제
- 제13장 글로벌시민협력학 및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의 학사

국제학대학원 학칙

제정일: 2000.03.01.

개정일: 2024.10.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민으로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자적 인재를 양성·배출하고, 또한 외국학생들에게는 한국을 폭넓게 이해시켜 미래 세계 발전에 동참할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국제학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정 및 정원

제2조(과정) ① 본 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두며,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본 원에 두는 학위과정 안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조(전공과 정원) ① 본 원에 설치한 전공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21.04.30., 2022.04.12., 2024.04.04, 2024.10.03>

전공		정원
석사	한국학 국제협력학 국제통상경영학 글로벌시민협력학 글로벌시민개발학	89명
박사	한국학 국제협력학 국제통상학 국제경영학	18명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22.02.11.>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소지자
 4.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신설 2022.02.11.>
- ③ 전공 변경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2.06.16>

제3장 입학

제4조(입학 및 전형시기) ① 본 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입학전형일은 입학전형요강으로 정한다. <개정 2022.02.11.>

제5조(지원 자격) 본원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02.11.>

- ①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받을 예정인 자, 또는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②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③ 통합과정: 동조 ①항(석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02.11.>

제6조(지원절차) 본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학전형 방법) 본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전형, 특별전형 또는 통합전형을 실시한다. 입학 허가는 입학사정회의 결정 사항을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시행한다. <개정 2022.02.11.>

제8조(편입학)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편입학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4장 등록, 휴학, 제적, 복학, 재입학

제9조(입학금 및 등록금)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액의 입학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등록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 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처음 4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규 8장 '타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3조에 의거 타대학원 이수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내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규등록 연한을 최대 1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② 통합과정의 학생은 처음 6학기는 정규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통합과정의 학생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학위 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위 과정 학생은 정규 등록 연한을 최대 1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2. 02. 11.>

제11조(등록금 감면)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제12조(등록금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간 수업일수의 1/3이상을 결석하게 될 학생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석사과정 1년(2학기, 2회 이내), 박사과정 2년(4학기, 4회 이내)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 6회 이내)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의무 복무를 위한 군입대와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4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학업 부실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학업성취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자. <개정 2022.02.11.>

제16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요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 허가는 1회에 한한다.

③ 학력부실, 징계제적 및 자퇴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5장 수업 및 학점

제18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모든 수업은 영어 또는 해당 지역 언어로 진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11.>

② 석사학위과정은 4년(8학기), 박사학위과정은 7년(14학기), 통합과정의 경우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매학기 15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 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4.15 이상인 자는 18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2.11.>

② 전공 이외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11.>

③ 전공 외 과목에서 얻은 학점은 전공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20조(이수학점) ① 본원의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해야 할 최저학점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42학점(논문작성을 할 경우) 혹은 48학점(논문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48학점으로 한다. 다만, 이 48학점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2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통합과정의 경우 최저취득학점을 60학점으로 한다.

④ 필수와 전공 이수과목은 각 전공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삭제 <2021.03.06.>

제21조(수강과목) 학생의 수강과목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하고, 학생은 해당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21조의2(학위과정의 연계운영)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과정 재학시 대학원 과목을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과목은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졸업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1조의3(교원 자녀의 수강신청)

-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과목 수강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소속 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학업평가) ①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평점	설명
A+	4.3	우수
A0	4.0	
A-	3.7	
B+	3.3	우량
B0	3.0	
B-	2.7	
C+	2.3	양호
C0	2.0	
C-	1.7	
F	0	불량
W	-	철회
P, NP	-	합격, 불합격

- ② 첫 번 수강한 과목의 성적평가가 'F'로 나온 경우 수강 신청 기한내에 재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R'로 성적표에 표시한다. 재수강 과목이 'F'일 때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제22조의2(교원 자녀의 시험 및 성적평가 관리) ① 사전에 승인 받은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의 경우 해당 교원의 소속 대학원장이 지명하는 교원이 시험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 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성적산출 근거 자료 보존기한은 10년으로 한다.
- ③ 대학원장은 제21조의 3 및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 제재하여야 하며 공정성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경우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수인정 평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평점 1.7)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그러나,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평량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제6장 자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24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과정의 경우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학점 평량평균이 3.7 이상인 경우 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의 경우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에 따로 정한다.

제25조(종합시험) 본원에 재학중인 박사학위 및 통합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을 위하여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삭제

② 박사학위과정 : 3학기 이상 이수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③ 통합과정 : 4학기 이상 이수하고 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제26조(외국어시험)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은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시민협력학 및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의 학생은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2.02.11.>
<개정 2022.04.12.>

② 통합과정의 학생이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 외국어 시험기준을 적용한다.

③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 및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27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시험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8조(학위논문 작성) ① 석사학위 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 과정은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02.11.>

② 통합과정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의 규정을 적용하되,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학위논문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완성된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소정기일내에 온라인 제출 및 학술정보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제29조(심사위원) 학위논문의 심사는 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고,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하되, 의결권에 있어서는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30조(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논문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행한다.

제31조(심사의결)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32조(재심사) 학위논문이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 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학위수여)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제34조(학위 종별) 본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학생의 전공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석사과정 <개정 2021.04.30.> <개정 2022.04.12.>

전공	학위명
한국학	한국학석사
국제협력학	국제학석사
국제통상경영학	
글로벌시민협력학	
글로벌시민개발학	

② 박사과정

전공	학위명
한국학	한국학박사
국제협력학	국제학박사(국제관계학 전공)
국제통상학	국제학박사(국제정치경제학전공)
국제경영학	전략조직학박사

제7장 조직

제35조(직제) 본원에는 원장, 부원장, 그 밖에 필요한 교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36조(전공별 주임교수) 본원에 전공별 주임교수를 두되, 본원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37조(운영위원회 구성) 본원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국제학대학원 전임교수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2.02.11.>

제3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의 입학 및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 ② 프로그램의 개폐 및 학생정원배정에 관한 사항
- ③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④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학위 또는 국제학대학원에 관한 제규칙, 제예규 등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국제학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의 2(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02.11.>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 간 정원조정 사항
3. 학위 수여 요건 변경 사항
4. 석사·박사·명예박사 학위 수여 취소 사항
5. 대학원 간 통합관리 및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9조(의결방법)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임기) 본원의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 공통교과과정 주임교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8장 연구과정 및 비학위 전문과정

제41조(입학자격 및 정원) ① 본원은 학위과정 외에 연구과정을 두며, 입학자격은 각 학위과정과 같다.

② 입학정원은 약간명으로 한다.

제42조(연구년한) 본 연구과정의 연구년한은 1년으로 한다.

제43조(실적증명) 본 연구과정에서 1년간 수학하고 소정의 연구성과를 낸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02.11.>

제44조(연구과목) 본 연구과정의 연구과목 또는 연구과제는 8과목 이내로 하되, 전공내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비학위 전문과정) 본원은 필요에 따라 최고위자과정을 비롯한 비학위 전문과정을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품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9장 외국인 학생

제45조(지원 자격) 제3조 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 및 외국인에 준하는 자로서 본원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제5조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2.02.11.>

제46조(입학시기 및 지원절차) 입학시기 및 절차는 제4조 및 제6조에 준한다. 제47조(입학허가)

제3조 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 학생은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제10장 상벌 <개정 2022.02.11.>

제48조(장학금) 본원 학생으로서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징계) 학생으로서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11장 교환학생

제50조(자격) 본원에 재학중인 자는 자매결연 대학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학할 수 있다. <개정 2022.02.11.> <개정 2022.04.12.> <개정 2023.03.28>

제51조(학점인정) 교환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본원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학대학원 교환학생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52조(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교환학생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학칙에 관한 내규와 본 대학교 및 일반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12장 복수학위제

제53조(자격) 본원에 재학중인 자는 우리 대학원과 복수학위제도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학할 수 있다. <개정 2022.02.11.> <개정 2022.04.12.> <개정 2023.04.1.>

제54조(등록)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되어 국내외 대학원에서 수학할 경우 각 학교와의 협정 운영지침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55조(학위수여) 복수학위 협정에 의해 양교의 학점이수 및 기타조건을 충족한 경우 양교 각각의 해당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제56조(학점인정) 복수학위협정에 의해 재학 중 이전되는 학점은 졸업이수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전공별 주임교수 및 부원장 및 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점이전절차를 거친 과목에 한해서만 학점이전을 허용한다. 다만,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하는 학교와의 협정에 따라 이전학점 수는 변동가능하다.

제57조(학생지도) 복수학위과정에 선발된 학생의 지도는 수학중인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58조(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과 체결한 협정에 따른다. <개정 2022.02.11.>

제13장 글로벌시민협력학 및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의 학사

<신설 2022.02.11.> <개정 2022.04.12.> <개정 2023.03.28.> <개정 2023.06.14.>

제59조(과정) <신설 2022.02.11.> <삭제 2022.04.12.>

제60조(수업) ①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의 수업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또는 해당 지역 언어로 진행한다.

<신설 2022.02.11.> <개정 2022.04.12.>

② 글로벌시민협력학 전공의 수업은 중국어로 진행한다. <신설 2022.02.11.> <개정 2022.04.12.>

제 61 조(이수과목) ① 글로벌시민협력학 및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 학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가. 글로벌시민협력학: 전공기초과목 12학점, 전공필수과목 18학점(18학점 중 Korean Language 6학점 필수 이수), 전공선택과목 18학점을 수강하여야 하며, 해당 전공 이외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나.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기초과목 9학점, 전공필수과목 18학점, 전공선택과목 21학점(한국어 외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강의하는 과목 9학점 이상 필수 이수)을 수강하여야 하며, 해당 전공 이외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22.02.11.> <개정 2022.04.12.> <개정 2023.06.14.>

② 글로벌시민협력학 전공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은 해당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단,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 소속 학생들의 경우 전공선택 학점 이수 요건(한국어 외의 언어로 개설한 교과목 이수) 충족을 위해 글로벌시민협력학 전공에 개설된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22.02.11.> <개정 2023.11.14.>

③ 글로벌시민협력학 및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 소속 학생이 타 전공 소속 수업을 수강신청하고자 할 경우, 수강신청 기간 내 다음 각 호에서 명시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어학성적표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해야 한다. 단, 해당 외국어가 모국어이거나 해당 외국어로 수학한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수업의 언어가 영어인 경우: TOEIC 930점 이상 또는 TOEFL 95점 이상 또는 IELTS 6.5점 이상의 어학성적을 제출

나. 수업의 언어가 중국어인 경우: 新HSK 6급 이상의 어학성적을 제출.

다. 수업의 언어가 한국어인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의 어학 성적을 제출

(글로벌시민협력학 소속 학생에게만 적용) <신설 2022.02.11.> <개정 2023.03.28.> <개정 2023.06.14>

④ 글로벌시민협력학 전공 소속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5 급 이상의 어학성적표를 제출하거나, 학생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 전공필수 교과목인 'Korean Language' 수업 이수 요건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본원 및 교내 일반대학원, 교내 전문대학원 수업 중 한국어로 수학하는 수업을 6 학점 이상 이수하여 필수과목 이수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단, 면제받은 학생의 국적이 한국이거나 모국어가 한국어인 경우 그 외 언어로 수학하는 과목으로 이수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02.11.> <개정 2023.03.28.> <개정 2023.06.14>

⑤ 글로벌시민협력학 및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 학생이 석사 논문 심의를 통과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공선택 이수학점 중 6학점을 감면한다. <신설 2023.08.02>

부칙

- (1)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학칙 제10조, 제14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의 2, 제49조, 제50조, 제51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학칙 제28조, 제41조는 2001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정학칙 제5조, 제22조는 200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5) 개정학칙 제34조는 2003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6) 개정학칙 제3조, 제45조, 제47조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개정학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8) 개정학칙 제24조, 제25조는 2005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9) 개정학칙 제34조는 2006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0) 개정학칙 제20조, 제28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11) 개정학칙 제10조는 2006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2) 개정학칙 제26조는 2007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3) 개정학칙 제21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14) 개정학칙 제 3조는 2011년 3월부터 시행한다.
- (15) 개정학칙 제28조, 제 34조는 2011년 3월부터 시행한다.
- (16) 개정학칙 제39조, 제40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17) 개정학칙 제24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18) 개정 학칙(제13조 제2항, 제3항)은 2016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19) 개정 학칙(제20조 제5항)은 2016년 9월부터 시행한다.
- (20) 개정 학칙(제21조의3, 제22조의2)은 개정일(2019.12.28.)로부터 시행한다.
- (21) 개정 학칙(제20조 제5항 삭제)은 개정일(2021.03.06.)로부터 시행한다.
- (22) 개정 학칙(제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은 개정일(2021.04.30.)로부터 시행한다.
- (23) 개정 학칙(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7조, 제15조 제3호,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7조, 제38조의2, 제43조, 제45조, 제10장, 제58조)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학칙(제10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50조, 제53조, 제13장, 제59조, 제60조, 제61조)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4) 이 개정 학칙(제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50조, 제53조, 제13장,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1항)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25) 개정 학칙 제3조 제3항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6) 개정 학칙(제 50 조)는 2023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7) 신설 학칙(제 61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은 2023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입학하여 졸업하지 아니한 재적생에게도 소급적용한다.
- (28) 개정 학칙(제53조)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9) 이 개정 학칙(제61조 제1항)은 2023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하되, 나호에서 정하는 글로벌시민개발학의 수업 이수 요건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 (30) 이 개정 학칙(제61조 제3항)은 2023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31) 이 개정 학칙(제61조 제4항)은 2023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3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 (32) 신설 학칙(제61조 제5항)은 202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33) 개정 학칙(제61조 제2항)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입학하여 졸업하지 아니한 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 (34) 이 개정학칙 제2장 제3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35) 이 개정 학칙(제3조)은 2024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국제학대학원 학칙에 관한 내규

1. 국제학대학원 입학 전형에 관한 내규
2. 국제학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입학에 관한 내규
3. 국제학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4. 국제학대학원 일반학사에 관한 내규
5. 국제학대학원 편입학학사에 관한 내규
6. 국제학대학원 수업 및 학업평가에 관한 내규
7. 국제학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
8. 타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9. 국제학대학원 "개별지도(Independent Study)" 과목설치에 관한 내규
10. 국제학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11. 국제학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12. 국제학대학원 연구과정에 대한 내규
13. 국제학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14. 국제학대학원 교환학생에 관한 내규
15. 국제학대학원 인턴십(Internship)에 관한 내규
16. 스위스 제네바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에 관한 내규 <폐지>
17. Dean`s List에 관한 내규
18. 어학연수에 관한 내규
19. 학부-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내규
20. 일본 게이오 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에 관한 내규 <폐지>
21. 미국 시카고 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에 관한 내규 <폐지>
22. 스위스 University of St. Gallen과의 복수학위과정에 관한 내규 <폐지>

1. 국제학대학원 입학 전형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24.04.0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원 학칙 제3장(입학)에 규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류) 각 전공별 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1.> <개정 2022.04.12.>

1. 석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나.

<삭제 2022.02.11.>

다.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라.

대학성적증명서 원본 1부

마.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1부(한국학 및 국제학 전공 지원자에 한하며, 입학전형 요강에 공인영어능력시험의 종류 및 면제 대상자 요건을 명시함)

바. 학업 및 진로계획서 1부

사. 군위탁교육 추천자가 아닌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부

아. 위탁교육 공문 및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기업체, 국방부 및 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위탁교육생)

자. TOPIK 4급 이상 성적표 원본 1부(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 지원자에 한하며, 전형 요강에서 면제 대상자 요건을 명시함)

차. HSK 5급 이상 성적표 원본 1부(글로벌시민협력학 전공 지원자에 한하며, 전형 요강에서 면제 대상자 요건을 명시함)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나.

<삭제 2022.02.11.>

다. 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라. 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마.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1부(영어전용 학부 혹은 석사과정을 졸업한 자의 경우 증빙을 제출할 경우 면제가능)

바. 학업 및 진로계획서 1부

사. 군위탁교육 추천자가 아닌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부

아. 위탁교육 공문 및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기업체, 국방부 및 정부, 행정자치부 등의 위탁교육생)

자. Research Plan 1부 차.

Writing Sample 1부 카.

추천서 2부

타. GRE 성적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파. 경력, 연구실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석·박사 통합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제3조(입학전형 요소) 본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입학전형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2.11.>

1. 석사과정

가. 서류심사: 대학성적, 외국어 성적, 학업계획서 및 기타 각 전공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한다.

나. <삭제>

다. 면접시험: 영어 또는 해당과정 강의 진행 언어로 진행하며, 전공할 학문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적성, 해당학문에 대한 열성과 진지성, 영어소통 능력 및 발표력, 기타 각 전공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한다.

2. 박사과정

가. 서류심사: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영어성적, 학업계획서 및 기타 각 전공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한다.

나. 면접: 석사과정에 준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에 준한다.

제4조(배점 및 합격기준) 입학전형 요소별 배점은 다음과 같이하하며,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입학 사정 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22.02.11.>

1. 석사과정

가. 서류심사: 70점 만점

나. <삭제>

다. 면접시험: 30점 만점

2. 박사과정

가. 서류심사: 70점 만점

나. 면접시험: 30점 만점

3.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에 준한다.

제5조(합격사정) 입학사정 회의 위원장은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류심사, 면접시험 점수를 종합하여 입학사정 회의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원장의 제청과 총장 결재를 거쳐 입학 허가를 시행한다. <개정 2022.02.11., 2024.04.04>

1. <삭제>

2. <삭제>

제6조(신입생 등록) 합격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무효로 하고 각 전공별 해당 차순위자를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22.02.11.>

제7조(위임)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2.02.11.>

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내규 제2조, 4조, 5조는 200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내규 제3조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정내규 제2조, 제5조, 제8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5) 개정내규 제3조, 제4조, 제5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6) 개정내규 제1조, 제4조, 제5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7) 개정내규(제2조 제1호 제마목)은 2020학년도 후기 입학 지원자부터 시행한다.
- (8)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4. 12.>
- (9) 이 개정내규 제2조는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내규 제5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2. 국제학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입학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24.04.0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원 학칙 제9장에 규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7항에 의한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02.11.>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3조(모집 시기) 학생의 모집시기는 일반대학원 입시 일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학대학원 입학전형 요강에서 정한 일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02.11., 2024.04.04>

제4조(전형 방법) 입학사정 회의 위원장은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장 결재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입학사정회의에서 선정한 합격자를 원장이 제청하고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단, 입학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면접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2.11.>

제5조(제출서류) ①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2.11.>
<개정 2022.04.12.>

1. 입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2. 출신대학 교수 혹은 직장상사 영문 추천서 2부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4. 대학성적증명서 원본 1부
5. 학업 및 진로계획서 원본 1부
6. <삭제 2022.02.11.>
7. <삭제 2022.02.11.>
8.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1부(한국학 및 국제학 전공 지원자에 한하며, 전형 요강에 공인영어능력시험의 종류 및 면제 대상자 요건을 명시함)
9. TOPIK 4급 이상 성적표 원본 1부(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 지원자에 한하며, 전형 요강에서 면제 대상자 요건을 명시함)

10. HSK 5급 이상 성적표 원본 1부(글로벌시민협력학 전공 지원자에 한하며, 전형 요강에서 면제 대상자 요건을 명시함)

11. 박사과정지원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학원(석사과정)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나. 대학원(석사과정)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다.

Research Plan 1부

라. Writing Sample 1부 마.

<삭제 2022.02.11.>

바. <삭제 2022.02.11.>

12.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에 준한다.

②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구생) 외국인은 본원 학칙 제8장에 의거 연구생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그 입학 절차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위임)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2.02.11.>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내규 제2조, 6조는 200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개정내규 제3조, 제6조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규 제2조, 제5조, 제8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5) 개정내규 제4조, 제5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6) 개정내규(제5조 제1항 제8호 제나목)은 2020학년도 후기 입학 지원자부터 시행한다.

(7)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2.>

(8) 이 개정내규 제5조는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내규 제3조, 제4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3. 국제학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22.02.1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원 학칙 제3장(입학) 제8조(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시험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교(원)에서 각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본원에서 각 학위과정의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

제3조(전형방법 및 기준) ①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의한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의 각호로서 행한다.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2. 학업 및 진로계획서
3. 그 밖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구술시험은 필답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영어로 진행되며 다음의 항목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그 밖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의 각호에 대한 구체적 선발기준은 해당 전공에서 정한다.

⑤ 박사과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을 통하여 선발한다.

⑥ 석·박사 통합과정은 석사과정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02.11.>

제4조(전형시기) 편입학전형은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배점 및 평가) ① 편입학 전형의 과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가. 서류심사: 70점 만점

나. 구술시험: 30점 만점 다.

<삭제>

2. 박사과정

가. 서류: 70점 만점 나.

면접: 30점 만점

3.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에 준한다. <개정 2022.02.11.>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이 개별적·비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평균으로 산출한 바에 의한다.

제6조(지원 구비서류)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본원의 외국인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개정 2022.02.11.>

1. 입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2.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1부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4. 학업계획서 1부
5. 박사과정지원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학원(석사과정)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나. 대학원(석사과정)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다.
<삭제 2022.02.11.>
라. <삭제 2022.02.11.>
마. 상기의 1~4항까지의 자료도 함께 제출
6.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에 준한다.

제7조(준용규정) 합격사정, 등록 등 그 밖의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원의 내국인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및 기타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내규 제2조, 3조, 5조는 200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내규 제5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4) 개정내규 제5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5) 개정내규(제3조 제6항, 제5조 제1항, 제6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4. 국제학대학원 일반학사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22.06.1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원 학칙 제4장에 규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본원 학생은 매 학기 초 설정된 기간 안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고, 이수계획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당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조(등록금 대체 및 반환) ① <삭제 2022.02.11.> 등록금 대체 및 반환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02.11.>

제4조(일반 휴학) ① 질병 또는 가사 등에 의해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서에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접수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제적된다.

② 등록을 마친 후 학기도중에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10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원서에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

제5조(입대 휴학) ① 학기도중에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 일주일전부터 입영일까지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사본)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중 입대하는 학생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입대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일로부터 1주일 내에 입대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대한 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1년이 초과되면 제적된다.

제6조(복학) ①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안에 복학절차를 밟아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02.11.>

② 입대휴학자는 복학원서 제출시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퇴) 질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자진 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자퇴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제적된 기간과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학력부실로 인한 제적, 징계제적, 자퇴 및 학업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22.02.11.>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의 1/2을 납부한다.

⑤ 제적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재입학을 하는 경우, 당초 입학시점의 졸업요건을 적용하고,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재입학 시점의 졸업요건을 적용한다.

제9조(전공 변경) ① 우리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는 3학기를 수료할 때까지 1회만 전공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공 변경 신청자는 공통 교과 및 소속 전공에서 개설한 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지원서를 지정기간 내에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06.16>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내규 제9조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규 제4조, 제6조, 제7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4) 개정된 제2조, 제8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5) 개정내규(제3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3항)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2. 6. 13.>

(6) 개정내규 제9조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국제학대학원 편입학 학사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22.02.1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원 학칙 제3장(입학) 제8조(편입학)의 학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본원 편입학 합격자는 학칙 제10조(등록)에 따라 소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이수학점) 각 학위과정에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학점인정) 본원에 편입학하기 전 국내·외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주임교수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허가를 받아 15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11.>

제5조(수업연한 단축) 편입학생은 이 내규 제4조(학점인정)에 따라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보충과목 이수) 편입학생은 해당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학위논문) 학위과정별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학대학원의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와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를 적용 받는다.

제8조(준용규정) 편입학 학사와 관련하여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원의 학칙 및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내규 제4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6. 국제학대학원 수업 및 학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24.10.0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원 학칙 제5장에 규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신청) ① 매 학기 15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2.11.>

② 수강과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수강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해당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 후의 잔여신청과목은 최저 2과목이상이어야 한다.(초과학기 제외)

③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이를 대신하여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④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에는 W(Withdraw)로 기재된다.

제4조(폐강) 개설한 학과목 중 수강신청자 수가 1차 수강신청 기간 후 5명 미만, 최종 수강변경 기간 후 3명 미만일 때는 그 과목을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재수강) ① 성적평가가 'F'인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한 과목의 평가가 다시 'F'일 경우에는 제적된다.

제6조(이수학점) ① 외국 교환대학의 대학원이나 교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그 학점을 해당 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02.11.>

제7조(삭제)

제8조(보충과목이수) 타전공입학생은 전공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부 보충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보충과목은 재학 중 4과목까지 수강가능하며,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가산되지 않는다.

제9조(공통 필수과목) 전공과 관계없이 공통 필수과목을 정하고 이를 1학기에 전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시민협력학 및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의 공통 필수과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2.11.> <개정 2022.04.12.>

제10조(세부전공) 각 전공별로 하위 세부 전공(Field of Concentration)을 두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부 전공에서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시민협력학 및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의 석사과정에는 세부 전공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2.02.11.> <개정 2022.04.12.> <개정 2024.10.03>

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6조(이수학점) 1항의 내용 중 “석사과정 18학점까지 인정가능”은 삭제한다.
- (3) 내규 제 8조는 2007년도 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 (4) 개정내규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5) 개정내규 제9조, 제 10조는 2011년 3월부터 시행한다.
- (6) 개정내규 제2조, 제3조, 제10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7) 개정내규(제2조, 제6조, 제9조, 제10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2022. 4. 12.>
- (8) 이 개정내규 (제9조, 제10조)는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9) 개정내규(제10조)는 2024년 10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9월 1일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7. 국제학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22.04.1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원 학칙 제6장 중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1.>

제2조(응시자격) 본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시험
 - 가. 삭제
 - 나. 박사과정: 3학기 이상 이수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다. 석·박사 통합과정: 4학기 이상 이수하고, 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2022. 02. 11.>
3.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학위만 취득할 경우 석사학위 과정의 시험기준이 적용된다.

제3조(시험과목) 본원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2.11.> <개정 2022.04.12.>

1. 종합시험
 - 가. 삭제
 - 나.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각 전공별로 출제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공 내에서 분야를 나누어 출제한다. 종합시험 분야는 지도교수와 학생이 논의하여 선정하며,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 시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외국어시험
 - 가. 석사과정
 - 1) 삭제
 - 2) 한국학을 전공하는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3) 1), 2)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영어성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글로벌시민협력학 및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 학생의 외국어 시험은 면제한다.
 - 나. 박사과정
 - 1)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영어 및 본인의 모국어를 제외한 1종의 공인어학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2)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단, 특수한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한국어 외의 공인어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3) 공인어학시험의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외국어 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 한국어: TOPIK 4급 이상
- 중국어: HSK 3급 이상
- 일본어: JLPT N2급 이상
- 그 외 언어: 전공 주임교수 판단

제4조(응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1.>

제5조(수험료) 삭제

제6조(시험회수) 종합시험의 실시시기 및 회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02.11.>

1. 종합시험 : 한학기에 1회로 하며, 시기는 따로 정한다.
2. <삭제 2022.02.11.>

제7조(출제범위) 종합시험은 전공영역의 지식과 연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한다.

제8조(합격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 점수는 각 과목별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02.11.>

제9조(재시험) 종합시험의 재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2.11.>

1. 종합시험
 - 가. 삭제
 - 나. 박사과정: 불합격된 자는 차후 2회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2. <삭제 2022. 02. 11.>

제10조(합격) 원장이 승인하여 종합시험 합격을 확정한다. <개정 2022.02.11.>

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내규 제9조는 2005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3) 개정내규 제2조, 제3조, 제7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4) 개정내규 제3조, 제5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5)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부 칙 <2022. 4. 12.>
- (6) 이 개정내규 제3조는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8. 타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24.10.0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원 학칙 제8조, 11장 및 본원 이외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원의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전공별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11.>

제2조(대상 대학원) ① 재학 중 학점을 이전할 수 있는 타 대학원은 교내 일반대학원, 교내 전문대학원 및 본원과 학점교환제 또는 복수학위제를 실시하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으로 한다.

② 입학생(편입학생 포함)의 경우 학점인정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시민협력학 및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 학생은 본원 이외의 대학원에서 입학 이전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거나 이전할 수 없다. <개정 2022.02.11.> <개정 2022.04.12.>

제3조 (학점이전 및 인정) ① 본 원의 각 과정에 재학중 타 대학원에서 수강·이전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15학점 이내로 하며,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도 이 15학점 속에 포함된다. 단, 복수학위 협정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 수강 및 이전 가능하며, 구체적인 학점인정의 범위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②본 원에 입학하기 전 국내·외 다른 대학원 및 본원의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석사과정은 12학점 이내,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24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주임교수, 부원장, 대학원장의 심의를 거쳐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최대 1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가. 편입학생의 경우는 “국제학대학원 편입학 학사에 관한 내규” 제4조를 적용한다.

나. ①과 ②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 학점의 이전이 가능하다.

제4조(학점인정절차) 학점인정허가는 해당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부원장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한다.

제5조(타대학원 수강 및 과목 신청 절차) 본원의 학생이 타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강신청시 본원에서 수강신청서를 발급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와 해당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기간 내에 본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강과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본원의 수강변경기간에 변경해야 한다.

3. 교환학생에 관한 기타사항은 “국제학대학원 교환학생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6조(준용) 본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내규에 따른다.

부칙

- (1)(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내규 제1조, 2조, 3조, 5조 1호는 2001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내규 제2조 1호, 3조 1호는 200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4) 제 3조 2항 및 4항은 2003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5) 개정내규 제3조는 2006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6) 개정내규 제2조, 제5조는 개정즉시 시행한다.
- (7)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2항)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2022. 4. 12.>
- (8) 이 개정내규 제2조 제2항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 내규(제3조)는 2024년 10월 3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재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9. 국제학대학원 "개별지도(Independent Study)" 과목설치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21.03.0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원 학칙 제5장(수업 및 학점) 제21조(수강과목)에 따라 "개별지도(Independent Study)" 과목을 설치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별지도"라 함은 학생이 전공 분야 중 해당주임교수의 허가를 득하여 지도교수로부터 개별적으로 과제를 지정 받아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과목의 개설) "개별지도"는 전공별로 필요에 따라 개설한다.

제4조(학점인정의 범위) "개별지도"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에서 각 3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6학점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가산할 수 있다.

제4조의2(박사과정 이수 의무) 박사과정의 경우 3학점 이상의 "개별지도"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1.03.06.>

제5조(학점단위 및 평가) "개별지도"의 학점단위는 3학점이며 학업평가는 정규과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제6조(개설과목 제한) "개별지도"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는 학과별 허용과목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조(책임시간) "개별지도"과목은 담당교수의 책임강의 시간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내규 제4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3) 개정내규 제4조의2<신설 2021.03.06.>는 2021학년도 1학기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 국제학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22.04.1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원 학칙 제6장에서 규정한 학위논문의 작성, 제출, 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1.>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02.11.> <개정 2022.04.12.>

1. 석사학위과정

가. 삭제

나. 입학 후 첫 두 학기 정규등록 취득학점 평량평균이 3.7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함. 다.

각 전공의 기본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4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한 자.

라.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마. 입학일로부터 8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심사 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박사학위과정

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나.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각 전공의 기본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4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한 자 라.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마. 입학일로부터 14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심사 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나. 석·박사 통합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각 전공의 기본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6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한 자.

라.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마. 입학일로부터 16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심사 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석사학위만을 취득할 경우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위논문) 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 지식이 밑바탕이

되어있음을 나타내야 하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으로 타당성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제4조(논문 지도교수 자격) ① 국제학대학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인사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경우 전공주임교수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정년 퇴임시까지 2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논문제출 자격심의) 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인준한다.

제7조(심사위원 선정) ①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가 본인의 연구 주제 관련부분을 연구하는 교수를 선정하여 논문계획서에 석사과정은 해당교수 3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해당 교수 5인의 날인을 받아 본원에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선정이 된다. 심사위원 구성은 석사의 경우 1인이상, 박사의 경우 3인 이상을 본원 교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02.11.>

② 원장은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의 심사를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연세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전공주임 교수가 승인한 외부인사로 한다. <개정 2022.02.11.>

제8조(심사위원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9조(논문 예비심사의 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평가서를 소정기일 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예비심사 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한 후,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킨다.

제11조(학위논문의 최종 작성) 논문제출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예비심사에서의 수정·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① 판 종 : 4·6배판(18.5cm × 25.5cm)
- ② 지 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 ③ 인쇄방식 : 단면 혹은 양면 인쇄하되 논문은 마스터, 옵셋 인쇄로 한다. <개정 2022.02.11.>
- ④ 제 본 식 : 클로스 양장
- ⑤ 표지색깔 : 석사학위 논문은 진한 감(紺)색, 박사학위 논문은 흑(黑)색으로 한다.
- ⑥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 <개정 2022.02.11.>
 1. 속표지
 2. 제출서
 3. 인준서
 4. 감사의 글
 5.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6. 영문요약(2페이지 이내)
 7. 본문
 8. 참고서적 목록
 9.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10. 국문요약(2페이지 이내)

제13조(학위논문 제출절차) ① 학술정보원의 양식에 따라 완성된 논문 4부를 제출하고 원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1.>

② 온라인 제출 확인서 및 이용허락서를 소정기일 내에 학술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1.>

제14조 <삭제>

제15조(학위논문의 본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재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③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 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④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⑤ 표절심사 작업을 완료한 논문만 본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논문평가 방법)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한다.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에 합격으로 간주하며,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17조(학위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최종 구술시험) ①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행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 방법은 논문 본심사의 평가 방법을 따른다.

③ 학위논문 심사에는 합격되었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재시험에 다시 불합격될 경우 학위논문의 합격 판정은 취소된다.

제19조 <삭제>

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내규 제7조, 제12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3)(시행일) 개정 내규 제2조는 2005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시행일) 개정 내규 제19조는 2005년 가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5) 개정내규 제14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6) 개정내규 제 2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7) 개정내규 제5조, 제13조는 2011년 3월부터 시행한다.

(8) 개정내규 제1조, 제7조, 제15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9)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2022. 4. 12.>

(10) 이 개정내규 제2조는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1. 국제학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22.04.1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원 학칙 제6장 제33조(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해당학기에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1. 석사학위과정

가. 48학점 이상 취득한 자(혹은 42학점과 석사학위 논문 심사 및 구술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받은 자 <개정 2022.02.11.>

라. <삭제>

마.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바. 8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자

사. <삭제>

2. 박사학위과정

가. 학칙 제20조 ②항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다 취득한 자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22.02.11.>

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마.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바.

14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자

사. 논문 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아.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을 게재한 자

3. 석·박사 통합과정

가. 학칙 제20조 ③항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다 취득한 자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22.02.11.>

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마.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바.

16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자

사. 논문 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아.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을 게재한 자

제3조(학위수여자 사정) 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개정 2022.02.11.>

제4조(학위수여) ①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본원 학칙 제34조에 명시된 대로 전공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복수학위 협정상의 소정의 요건을 이수한 자는 각 협정에 따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③ 학위의 세부 내역으로 세부전공(Field of Concentration)을 두 개까지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시민협력학 및 글로벌시민개발학 전공은 세부전공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2.02.11.> <개정 2022.04.12.>

제5조(보고) 총장은 학위수여자를 교육부에 보고한다. <개정 2022.02.11.>

제6조(학위수여 시기 및 횟수) 학위수여의 시기는 2월과 8월 연 2회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내규 제2조, 4조는 200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개정내규 제 2조 1항은 2005년 봄학기 입학생부터, 2항 및 3항은 2005년 가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개정내규 제3조, 제4조, 제5조는 2011년 3월부터 시행한다.

(5) 개정내규(제2조 제2호 아목, 제3호 아목)는 2016년 9월부터 시행한다.

(6)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 제3항, 제5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2022. 4. 12.>

(7) 이 개정내규 제4조 제3항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 국제학대학원 연구과정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22.02.1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원 학칙 제8장에서 규정한 연구 과정 관련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1.>

제2조(지원자격) 본원 연구과정의 지원자격은 각 학위과정의 지원자격과 같다.

제3조(등록) ① 학칙 제9조에 의거 매학기 소정액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정생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연구년한) 본 연구과정의 연구년한은 1년(2학기)으로 한다.

제5조(이수학점) ①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국제학대학원 과목 중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연구수료가 가능하다.
② 한 학기당 12학점 이하로 수강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조(실적증명) 본 내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02.11.>

제7조(석사과정 지원자격) 연구과정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수료한 학생이 석사과정에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02.11.>

1. 12학점을 이수한 학기가 1개 학기 이상
2. 공통교과과목 모두 이수
3. 누적 평량평균 3.5/4.3 이상(다만, 타 대학원 강의 및 한국어 강의는 누적 평량평균에서 제외)

부칙

- (1)(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내규 제2조는 2001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내규 제3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4) 개정내규 제7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5) 개정내규(제1조, 제6조, 제7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13. 국제학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22.02.1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제학대학원 학칙 제48조(장학금)에서 규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1.>

제2조(적용범위) 본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류) 본원에서 지급 관장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신입생 장학금
2. 성적우수 장학금
3. 학비 지원금
4. 조교 장학금
5. 외부기금 장학금
6. 인턴십 지원금
7. 봉사 장학금
8. 복수학위 장학금

제4조(선정 및 지급방법) 본원 장학금의 선정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신입생 장학금: 입학성적이 우수한 내국인 및 외국인 신입생에게 지급한다.
2. 성적우수 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학업성적이 4.0이상인 재학생 중 평량평균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3. 학비 지원금: 제 6조의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4. 조교 장학금: 교내의 학사 및 기타 업무를 지원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5. 외부기금 장학금: 정부 및 기타 외부기관에서 제시한 지급기준에 맞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6. 인턴십 지원금: 인턴십 보고서와 승인/평가서 내역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7. 봉사 장학금: 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의 활동내역에 따라 지급한다.
8. 복수학위 장학금: 상대교와의 협약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심사) 전공 주임교수는 신청자의 성적, 인품 및 학적사항들을 고려하여 외부기금 장학금 수혜자를 원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2.02.11.>

제6조(Financial Aid의 추천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참작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원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2.02.11.>

1. 9학점 이상 이수 및 학업성적이 3.5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청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다.
3. 장학생수의 학기별 균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장학금 수혜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1. <삭제>
2. 재입학
3. 징계(유기정학 이상) 해제
4. 성적 "F"의 평가를 받은 자
5. <삭제>
6. 타 기관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7. 기타 학칙 위반자

제9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1학기로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및 대학원의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내규 제7조, 8조는 200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내규 제3조 제 1,2,3,5항 및 제 4조는 제 1,2,3,5항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 (4) 개정내규 제3조 제4항 및 제 4조 제4항은 2005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 (5) 개정내규 제6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6) 개정내규 제4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7) 개정내규 제3조, 제4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8) 개정내규(제3조 제4호, 제7호, 제8호, 제4조 제4호, 제7호, 제8호)은 개정일(2019.12.25.)로부터 시행한다.
- (9) 개정내규(제1조, 제5조, 제6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14. 국제학대학원 교환학생에 관한 내규

제정: 2001.03.01.

개정: 2013.12.11.(4차)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원 학칙 제11장(교환학생)에 규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자격) 교환학생의 지원자격은 본교 담당 부처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원의 허가를 받아 국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학기간) 교환수학 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 기간동안 반드시 본원의 재학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①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인정한다. 단, 국제학대학원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으로 해당 전공주임의 인정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최고 15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교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 인정한다.

제7조(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내규 제3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3) 개정내규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4) 개정내규 제6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15. “인턴십(Internship)”에 관한 내규

제정: 2001.11.07.

개정: 2022.02.1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턴십(Internship)”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인정요건) 재학중 인턴십활동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인턴십 지원시 국제학대학원 취업정보실 담당교수 및 해당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② 상근직 조건이며 기간은 최소 10주 이상일 것 <개정 2022.02.11.>
- ③ 인턴기간 종료 후 3개월 내에 인턴십 기관의 평가보고서 및 인턴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인턴으로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수준이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학점인정범위 및 방법) ① 인턴십은 최대 6학점까지 허용되며 최대 2번의 인턴십을 할 수 있다. 15주 이상의 인턴십은 3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보다 짧은 인턴십은 취업정보실 담당 교수의 검토를 거쳐 2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11.>

② 성적은 표기되지 않으며 이수학점에만 가산된다. 다만, 인턴십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준용) 본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취업정보실 담당교수, 부원장, 원장의 학점인정방침에 따른다.

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2조, 제3조, 제4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3) (시행일) 개정 내규 제 2조, 제3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 (4) 개정 내규(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16. 스위스 제네바대학교의 복수학위과정에 관한 내규

제정: 2004.08.11.

개정: 2013.12.11.(3차)

폐지 2021.01.31.

17. Dean's List에 관한 내규

제정: 2006.04.25.

개정: 2022.02.11.

제1조(목적)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이를 수여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정규학생으로 등록하여 최종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해당 학기 평량평균이 4.0 이상인 자로 한다.

제3조(예외) 학기초과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제4조(절차) 부원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시상한다. <개정 2022.02.11.>

제5조(학적부기재 등) Dean's List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표창은 상장을 수여하며, 학적부에 이를 기재한다. <개정 2022.02.11.>

제6조(수여시기) 삭제

제7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및 대학원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적용 및 시행일) 이 내규는 2005-2학기 등록생부터, 2006년 2월 27일부로 적용,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12학년도 2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3) 개정규정 제 6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2조)은 개정일(2019.12.25.)로부터 시행한다.

(5) 개정내규(제4조, 제5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18. 어학연수에 관한 내규

제정: 2007. 2.

개정: 2022.02.1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어학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인정요건) 재학중의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가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국제학대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학 중 해외어학연수 및 교내 어학프로그램에 참가할 것
- ② 연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종료했음을 증명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할 것
- ③ 해당주임교수의 사전 승인 후 어학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제3조(학점인정범위 및 방법) ① 방학 중 해외어학연수의 경우 1회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최종 학점인정여부는 부원장과 원장의 승인에 의해 결정된다.

- ② 성적은 표기되지 않으며 이수학점에만 가산한다.
- ③ 학점인정은 어학연수에 참가한 다음학기에 이루어지며,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준용) 본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학점인정방침에 따른다. <개정 2022.02.11.>

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도 겨울방학 참가자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내규 제2조는 개정 즉시 적용한다.
- (3) 개정내규 제4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19. 학부-석사연계과정에 관한 내규

제정: 2010. 2.

개정: 2022.02.11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학칙 제40조의2 및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 통합) 연계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본 대학교 대학/학부/학과의 우수한 학부생을 국제학대학원 유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02.11.>

제2조(과정운용) <개정 2022.02.11.>

1. 지원자격: 2학년(4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전체 평량평균이 3.3/4.3 이상이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장학금: 연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연계과정 장학금'을 석사과정 입학 후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최대 지급학기는 석사과정 3학기로 한다.
3. 자격유지
 - 가. 연계과정에 진입한 학생은 매 학기 평량평균 3.3/4.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성적이 미달할 경우에는 연계과정 진행을 중단한다. 7학기까지의 평량평균이 3.75/4.3 이상이면 7학기 이수 후 졸업 및 대학원에 입학한다.
 - 나. 7학기 이수 후 누적 평량평균이 3.3/4.3 이상 3.75/4.3 미만이면 조기졸업은 불가하며 8학기 이수 후 대학원에 입학한다.
4. 학점취득
 - 가. 연계과정에 진입한 학생은 학부 재학 중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24학점 중에서 대학원 과목도 학기당 최대 6학점, 전체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하도록 권고한다. 단, 대학원 과목의 이수 학점은 학부과정 이수학점 및 성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원 진학 후에 대학원 졸업 학점으로 인정된다.
 - 나. 대학원 진학 후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선택)을 작성한다.

부칙

- (1) 개정된 이 내규는 2006년도 겨울방학 참가자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내규(제1조, 제2조)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20. 일본 게이오 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에 관한 내규

제정: 2010.2.

개정: 2013.12.11.(2차)

폐지: 2022.02.11.

21.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복수학위과정에 관한 내규

제정: 2010.2.

개정: 2013.12.11.

폐지: 2022.02.11.

22. 스위스 University of St. Gallen과의 복수학위과정에 관한 내규

제정: 2010. 2.

개정: 2013.12.11.

폐지: 2022.02.11.